

공공기관 I-PIN 의무도입 적용지침

2011. 4



정보화 전략 실
개인정보보호과

I. 목 적

- 이 적용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('11.3)에 따라 공공기관의
공공 I-PIN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함

〈 공공 I-PIN 개요 〉

① 공공 I-PIN의 정의

- 공공I-PIN이란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,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의미
-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,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

② 특징 및 장점

- (주민번호 유출방지) 적용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대신 I-PIN에서 생성되는 가상 식별번호를 수집함으로써,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
- (무료서비스) 공공I-PIN 적용기관은 별도의 이용요금 없이 I-PIN 이용자 확인 할 수 있는 무료 본인확인서비스
- (변경 및 폐기기능) 공공I-PIN 가입 회원은 I-PIN 유출시에는 I-PIN에서 제공된 고유식별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유출에 따른 피해 최소화 가능

※ 공공 I-PIN 서비스 도입 전/후 비교

구분	주민등록번호 사용 웹사이트	공공 I-PIN 사용 웹사이트
주민등록번호 입력 여부	입력	미입력
식별정보 유출시 변경여부	변경 불가	변경 가능

II. 적용근거

-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

- ◇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※ 공포('11.3.29)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('12.3.29)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5(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)

- 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5(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)
게시판을 설치·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(이하 “본인확인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
III. 적용범위

1. 적용대상

〈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항 〉

“공공기관” 이란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-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
 - 국회사무처, 법원행정처, 헌법재판소 사무처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

○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) 및 그 소속기관

- 중앙행정기관은 전국적인 규모로 대국민 행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(부·처·청)을 의미
-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「정부조직법」 제3조의 특별지방행정기관(지방체신청, 지방국세청 등), 제4조의 부속기관(시험연구기관, 교육훈련기관, 문화기관, 의료기관, 제조기관, 자문기관 등)을 의미

○ 지방자치단체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,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(광역지방자치단체)
-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시, 군, 구(기초지방자치단체)
-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3항의 특별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조합)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의 자치경찰기관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의 직속기관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4조의 사업소, 제115조의 출장소, 제116조의 합의제행정기관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교육위원회, 제18조의 교육감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등

○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- ⇒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됨 (2010년 총 285개 기관)
-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
 - ⇒ 출연연구기관(한국행정연구원 등), 재단(한국국제교류재단 등), 공단(한국산업인력공단 등), 진흥원, 협회, 공제조합 등
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⇒ 서울SH공사, 서울메트로, 경기지방공사, 지방공사 의료원 등
(공사·공단 131개, 2009년)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⇒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, 전문대학, 방송통신대학, 기술학교, 대학원 등

2. 적용분야

- (회원가입) 적용대상 기관이 웹사이트 회원 가입 요청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
 - 주민등록번호를 입력(수집)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적용기관 웹사이트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도입※ 공공 I-PIN을 적용하였으나,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수집 동의 등 절차에 따라 수행 추진
- (게시판글쓰기) 적용대상 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게시판 글쓰기시
 -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공공 I-PIN을 활용

3. 적용제외

-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웹사이트

IV. 적용기관 도입절차

1. 적용기관별 공공 I-PIN 적용을 위한 계획 수립

① 웹사이트 관리자(담당자) 지정

② 적용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별 공공 I-PIN 연계모듈 적용 일정 수립

※ 운영되는 웹사이트의 경우 공공 I-PIN 평균 도입 소요 기간이 2~4주 소요

③ 적용 대상 웹사이트별 사전기술 검토(운영체계, 웹서버, WAS,
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의 제품명 및 버전 확인)

※ WAS(Web Application Server) : 데이터베이스 조회나 일반적인 비즈니스 로직에
대한 처리를 위해 다양한 언어로 개발된 인터넷/인트라넷 환경의 소프트웨어

2. 공공 I-PIN 도입절차

① 서버인증서 발급요청

- 공공 I-PIN 적용 시, 웹사이트와 공공 I-PIN 센터 간 전송 데이터의
암호화를 위해 기관에서 설치해야 할 서버인증서 필요

※ 웹사이트별로 서버인증서 필요, 단 서버 이중화 등의 경우 1개의 서버인증서 필요

(예시 : A기관에서 www.aaa.go.kr, www.bbb.go.kr 등 2개의 웹사이트를
운영하는 경우 2개의 서버인증서 필요)

< 서버인증서 발급 문의 >

① 행정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(02-3279-3490)에 서버인증서 발급 문의

② 교육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(02-2118-1755)에 서버인증서 발급 문의

③ 공사·공단은 민간업체에 서버인증서 발급 문의

※ 민간업체 : 한국정보인증(1577-8787), 코스콤(1577-7337), 금융결제원
(1577-5000), 한국전자인증(1566-0566), 한국무역정보통신(1566-2119)

② 적용기관 기관내 방화벽 포트(Port) 오픈 확인

- 적용기관과 공공 I-PIN 센터간 정보 송·수신을 위해 적용기관 방화벽(침입차단시스템) 포트(Port) 오픈

출발지	목적지	포트	비고
사용자 (공무원)PC	공공I-PIN 웹서버 www.g-pin.go.kr	공공 I-PIN 센터 문의시 포트 안내	공공I-PIN 담당자 창구 접속 및 보안제품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한 포트

③ 대상 웹사이트별 담당자 등록신청

- 공공 I-PIN센터 담당자 홈페이지(www.g-pin.go.kr)에 접속하여 웹사이트별 담당자 등록
 - ※ 대상 웹사이트별로 담당자가 있는 경우 각각 등록
- GPKI(행정전자서명) 또는 NPKI(공인인증서) 선택하여 로그인
- 해당 업무중 “이용기관 담당자 등록” 항목을 선택하여 담당자 등록 신청
 - ※ “이용기관 담당자”는 공공 I-PIN센터에서 당일 일괄 승인 처리
(단 이용기관 담당자명과 인증서 성명이 다른 경우 승인 보류)

④ 이용기관 웹사이트 연계신청 작성 및 사이트 등록

- 담당자 등록 승인 후 공공 I-PIN 센터(www.g-pin.go.kr)에 대상 웹사이트별 기관정보, 활용목적, 서비스예정일, 시스템 정보 등 공공 I-PIN 적용을 위해 필요한 연계신청서 작성 및 사이트 등록
- 적용기관 웹사이트 승인시 공공 I-PIN 센터로부터 웹사이트 아이디 부여
 - ※ “적용기관 웹사이트 승인”은 공공 I-PIN센터에서 당일 일괄 처리되며
공공 I-PIN 적용신청이 폭주할 경우 서비스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보급 지원
- 적용기관에서는 공공 I-PIN 연계를 위해 필요한 모듈을 다운로드하여 설치

⑤ 연계시험 및 서비스 개시 전 점검 항목 등록

- I-PIN 모듈 설치 후 본인확인 테스트 등을 통해 정상 설치 여부 확인
- I-PIN 서비스 개시 전 "오픈 전 점검항목 등록" 메뉴에 공공 I-PIN 서비스 점검, 중복가입방지, 사용자정보 동기화 등 6개 분야 20개 점검 항목 등록
- "오픈등록" 메뉴에서 사이트명 등 관련 정보 등록

3. 웹사이트별 I-PIN 서비스 개시 및 안내

- 웹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 I-PIN 적용과 관련한 회원가입 변경절차 안내 등 홍보